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13 선고 2024가단974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8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C호(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58.2㎡)를 인도하고,

나. 4,050,000원 및 2024. 5. 17.부터 위 가.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,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강신영

별지